

의안번호	2220826
의 퇴 인	권향엽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8.
추 계 번호	26A4323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	○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(제1항) － 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－ 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－ 3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사업 지속, 휴·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	재량규정
2	안 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(제1항) － 17의2. 소상공인에 대한 <u>보험료</u>의 지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외에 “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사업 지속, 휴·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료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
 - 현행법 제12조의7¹⁾에 따라 정부는 「소상공인재기지원」²⁾ 사업의 내역사업인 ‘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’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, 동 내역사업의 2026년 예산은 153억 1,200만원(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), 2027년 예산안은 241억 2,900만원(소상공인 고용보험료·산재보험료 지원)이 편성됨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이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될 보험 및 해당 보험에 가입할 소상공인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, 개정안에서 지원 수준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소상공인재기지원」³⁾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‘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’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창업 5년 미만 청년·소상공인의 위험구간별 휴·폐업 예방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

1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 ① 정부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

2) 코드: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9

3) 코드: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31-319

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, 동 내역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300억원이 편성됨

※ [참고자료] 청년 창업 안심보험 개요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청년 창업 안심보험 개요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)

□ 창업성공 격려, 위기 및 실패를 극복하는 정책보험

- (목적) 창업 후 **최대 15년**을 보장·지원하는 **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보험제도**를 신설, 위기 시 **휴폐업** 시 폭넓고 다양한 안전망을 보장하여 '**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**'는 **희망과 재도전의 기반** 마련
 - *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일정 부분 부담하되, 정부가 제도를 뒷받침하여 경영위험과 생계위험을 함께 대비하도록 하는 공공형 보험으로 민간보험사가 운영
- (내용) 휴업을 통한 경영유지, 폐업 시 재도전 안전망을 지원하고, 경영유지 시 사업확장을 지원하는 **폐업 예방형 정책보험**

<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보험(안) >

구 분	지원내용	지원금액
휴업 * 결혼, 출산, 재난, 질병 등	사무실 임차료, 인건비,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	최대 3개월간, 최대 일 10만원
폐업 * 매출 감소, 질병,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	재창업 비용, 사무실 임차료, 근로자 임금 등	최대 2천만원 지급
창업 성공* * 경영유지 특약	①업력 3·5·7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	①사업화 격려금 지급* ②적립금(목돈) 지급

* 인테리어 개선,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자금 활용 용도

- (지원절차) (신청) 소상공인 ↔ (사업관리) 소진공 ↔ (보험운영) 보험사업자

□ 예산 산출 근거

- 300억원(위험구간 청년 창업자 4.8만명* × 월 10.4만원 × 6개월)
- * 청년층의 창업 도전 확대 등을 위해 **청년 신규 창업 약 24만개**(‘23년 기준, 지원제외 업종 제외)의 **약 20%**를 지원한다고 가정

< 구간별 연간 보험료 지원(단위 : 만원) >

업력	0~2년 (위험구간)	3~5년 (보호구간)	5~7년 (안정구간)	7~10년 (성장구간)	10~15년 (지속구간)
보험료 + 적립금	152(보험) + 38(적립)	133(보험) + 57(적립)	114(보험)+ 76(적립)	76(보험)+ 114(적립)	57(보험)+ 133(적립)
정부지원	약 122만원 (보험료의 80%)	약 80만원 (보험료의 60%)	—	—	—